

# 장애인사격 심판 라이플 자격 관리 · 운영규정

2021.11.29. 제정

2022.10.31. 개정

2023.12.13.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자격의 검정업무(이하 “검정”이라 한다.)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보조위원 시험감독위원, 실기보조위원,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 위원을 말한다.
-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 시험 답안지(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 “비번호”라 함은 답안지 시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가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 및 작품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 “수험번호”라 함은 검정시행 시 수험자의 왼쪽 가슴 상단에 부착하는 숫자 및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 제2장 업무구분

**제3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연맹은 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수첩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 ② 시행 주관팀(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관 팀은 위원회에서 행정과 현장 실무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수험원서 교부, 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6.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 및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 ③ 연맹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심판위원회의 장, 연맹 직원 1인 외, 기타 약간 명의 일용직 직원과 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자격 검정시험 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4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 자격이다.

**제6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자격은 사격 경기규정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사격경기 운영, 판정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 ② 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자격은 별도의 등급 구분이 없다.
- ③ 본 자격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국내 장애인 사격 대회 및 경기의 소총, 권총 종목 경기운영.
  - 2. 국내 장애인 사격대회 및 경기의 전자표적운영 및 관리와 경기결과의 기록 및 판독.
  - 3. 국내 장애인 사격 대회 및 경기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사격 복장 및 장비검사 및 관련 업무.

**제7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자격명은 ‘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자격’ 이라 한다.
- ② 라이플에 검정기준은 전문가 수준의 사격종목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사격경기 심판으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 다음과 같다.
  - 1. 일반 경기 규정 숙지에 관한 사항.
  - 2. 종목(소총, 권총)경기 규정 숙지에 관한 사항.
  - 3. 전자표적 원리 이해 및 판독능력 보유에 관한 사항.
  - 4. 심판으로 역량, 윤리 및 사격종목 이해에 관한 사항.

**제8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기로 한다.

-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 2. ○×방식의 규정 조항 명시형으로 한다.
  - 3.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② 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자격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 2. 학력에 제한은 없다.
  - 3. 당해 강습회 이수자.
  - 4. 대한장애인사격연맹 및 대한사격연맹 주최 또는 주관대회 3회 이상 참가자<23.12.13>

**제10조(검정의 일부 면제)**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제11조(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과목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제4장 수험원서

**제12조(검정안내)** ① 연맹은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연맹의 주관팀 담당자는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3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주관팀 및 연맹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검정 당일에 교부한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5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연맹에서 접수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응시자 요청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 ⑦ 검정수수료는 일금 20,000원으로 하며 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자격의 자격 증 발급비는 주관팀 및 연맹에서 책정한다.
- ⑧ 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자격의 자격증 재발급 비용은 일금 20,000원으로 연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 요청한다.

**제17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 보고)** ①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접수 현 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연맹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험 연명부 파일을 연맹 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①연맹과 위원회는 시험실 배치 계획표, 좌 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19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주관 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 참률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장 준비)** ①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심판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 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주관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2조(출제 · 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

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출제 · 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 ② 해당 조건 중 연맹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  
1. 국제심판자격 소지자.  
2. 국내대회 5년 이상 심판 경력자.  
3. 현 연맹 심판위원회 위원.

**제24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맹 사무국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 · 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담당팀장은 실무자급 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자격 검정위원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팀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담당팀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25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 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②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 제 7 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26조(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연맹의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시험문제 인쇄는 연맹이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제27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 연맹 검정시행 담당팀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연맹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시험문제 담당팀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 책임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여 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행 주관팀에서는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연맹에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행 주관팀은 연맹으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 ⑤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 제8장 검정시행

**제28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 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①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제30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 · 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 (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1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원서부

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연맹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와 같이 배치하되, 사업 예산에 따라 필요한 인원에 대해 증액 또는 감소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3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연맹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 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36조(시험위원의 위촉)** 시험 감독위원은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 ① 해당 조건 중 연맹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
1. 국제심판자격 소지자.
  2. 국내대회 5년 이상 심판 경력자.
  3. 현 연맹 심판위원회 위원.

**제37조(시험위원의 임무)**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독찰 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2.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품의 배부 및 회수, 시험 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실기시험의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4. “보조요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8조(본부위원의 임무 등)** ① 연맹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으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2. 검정 진행상태 점검.
3.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4.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5.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6. 회수한 답안지를 연맹으로 운반.

## 제10장 필기시험 채점

**제39조(답안지 인계)** ①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연맹에서 운영하는 검정 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0조(정답교부)** ① 검정사업단 검정업무 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 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답 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41조(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수기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수험자 인적사항의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③ 답안지 채점은 총점으로 채점하여야 한다.

**제42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 제11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3조(합격자 공고)** ①연맹회장은 검정종료 후 15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자격증 교부)** ①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인사격심판라이플 자격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 제12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5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비승인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内外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

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험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연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47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난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8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 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 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 제 13장 보 칙

- 제49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

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  
· 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2021.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등록 후 이사회 의결 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  
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필기 시험형태 및 과목

[별표 1]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표(제12조 관련)

종목	시험과목	시험형태 및 문항 수		시험시간
		○, × 형 (규정조항 명시형)	합계	
장애인 사격심판 라이플 자격	일반기술규정	15문항	15문항	90분
	소총, 권총 경기 운영과 기술 규정	15문항	15문항	

[별표 2] 감독위원 배치기준(제33조 관련)

구분	시험위원	위촉인원	비고
필기시험	정감독	1명 이상	시험실당
	부감독	1명 이상	시험실당
	관리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본부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본부보조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안내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